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이광희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규정 (안 제3, 4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다.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도민 등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마.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보조 규정 (안 제8조)

5. 검토의견

○ 위 제정 조례안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충청북도 소재 등록법인으로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의 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 충청북도민이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도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책에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서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위 조례 제정안은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정지원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충청북도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도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안 제7조(홍보 및 교육)에서 규정한 대로 도민홍보와 관계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끝.